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회부예산

가.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0년도 11월 20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12. 12. 상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 12. 21.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안이유

○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1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16백만원이 증가하였

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925백만원, 특별회계가 13,249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0,065백만원, 세외수입 12,778백만원, 지방교부세 50,000백만원, 지방양여금 12,346백만원, 재정보전금 1,59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13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79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450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8,943백만원, 사업예산 59,915백만원, 채무상환 602백만원, 예비비등 8,465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경상예산 638백만원, 사업예산 10,238백만원, 채무상환 2,284백만원, 예비비등 89백만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111억 7,3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865억 5,791만원대비 28.4%인 246억 1,60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1억 8,565만원이 증가한 979억 2,4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4억 3,036만원이 증가한 132억 4,906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대비 22.8% 증가한 979억 2,486만원으로 이는
 -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100억 6,494만원, 세외수입 127억 7,856만원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500억, 지방양여금 123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8,809만원, 보조금 111억
3,7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6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500만원
이 감소하였음.

신설되는 주행세는 2억 2,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음.

-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4억 8,809만원으로 전년
대비 8,446만원이 감소 되었음. 이는 경기둔화와 각종현장사무소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과년도 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음. 지속적인 체납활동 의지로 보아짐.

《세외수입》

- 세외수입 총규모는 127억 7,856만원으로 전년대비 3,47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26.8%, 수수료수입
60.3%와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95.7%, 부담금
267.7% 각각 증가한 것이 원인임.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1%인 500억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임.

〈지방양여금〉

- 국세중 전화세, 주세의 전액과 농특세의 19/150%가 재원이 되고 지역의 균형개발의 기능이 있으며 전국 공통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 특정사업 수요충당을 위한 것으로 포괄적이나 용도지정,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것임.

군도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명목으로 123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 15억 9,809만원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징수교부금의 27% 재원으로 그중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10%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보전하는 것임.

〈보조금〉

- 국고보조금 82억 2,397만원은 전년대비 22% 감소 되었고,
- 도비보조금은 29억 1,329만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979억 2,486만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은 지난해보다 5% 줄어든 30%로 구조조정
으로 인건비의 구성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임.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 많은 61%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은 지난해 44%에서 27%로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6%
에서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시 변동이 있을 것이나 지난해 당초
예산시 보다 80억 1,555만원이 감소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되었음.

○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6억 2,894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구성비
21.1%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는 0.6%인 5억 5,281만원, 일반행정비
는 20.5%인 200억 7,612만원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325억 8,98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비로 볼 때
지난해보다 1% 증가 하였음.

셋째 경제개발비는 398억 1,58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전년도 보다 1.3% 감소한 것임.

넷째, 민방위비는 1억 6,78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것임.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2,23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보다 154.4% 증가한 것으로 지방채상환 6억 195만원과 예비비 비율은 지난해 구성비 1%에서 4%로 415.1% 증가시킨 것은 국도비확정내시시 군비부담을 대비한 것임.

○ 계속사업비

- 계속사업비에 대한 2001년 투자액은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 5,500만원, 방림상수도공사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10억,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 11억 2,000만원,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 6억이 편성 되었으며,
- 평창교 가설공사는 2001년 투자계획이 당초 33억원에서 23억원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정하였음.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액 보다는 증액하여 예산의 진행중인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 하므로 매물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 사업, 효석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는 일부만 예산이 반영되어 추정시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계속비사업은 순수 군비의존 보다는 국도비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종합 의견

-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23.3%는 전년도 당초예산시 24%보다 0.7% 감소한 것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는 해결되나 순수 지방세 100억 4,496만원으로는 인건비 122억 9,163만원을 해결치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됨.
(지난해 전국 77개군이 미해결)
 - 지방세 구성비는 전년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수증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됨.
- 세외수입 균유잡종지 대부수입중 읍면 직원용 숙소(관사 개념에서 제외) 건물분 임대료 5백만원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잡종재산 무상임대 또는 관사관리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 검토필요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 규칙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10억 이상 50억미만은 자체심사, 50억이상은 도지사의 심사를 용역·설계전에 사전 심의 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령·절차를 미이행한 예산이 계상되었음
 - 김치뮤지엄파크 부지매입 : 5억(총 171억원)
※ 2000.10.16 강원도로부터 국비지원 불투명 이유로 재검토 지시
 - 사리평 교량가설공사 : 5억(총 15억)
※ 자체심사 미이행

- 예산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이 원칙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예산을 별도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관례임.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억 (군 13억, 읍면8억)과 반상회 건의사항 1억원등 총 22억을 편성한 것은 관례나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집행시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읍면별 수요가 고른 일반사업은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군의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나,

마을회관 2동, 경노당3동등과 같은 사업은 관심있는 일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기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설명도 없이 재계상되는 경우, 일부포상금·보상금등을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부분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복지증진에 나름대로 노력것으로 분석은 되었습니다만,
- 고른 자원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일선 읍·면장 관사 무료대부 방안은?	○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며, 미부과시 인센티브에 적용을 받는 것임.
○ 주행세 내역은 ?	○ 교통세의 3.2%임. 요율에 있어 3.2%에서 11.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계류중에 있음
○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는데 근거는?	○ 내국세에 근거한 것임.
○ 국내자매단체및해외교류관련 외빈 초청경비에 대하여?	○ 국제교류시 이에 대해 별도예산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임.
○ 시·군 예산담당 연찬회 운영에 대하여?	○ 당초 및 추경예산 강원도 작업시 필요한 경비임.
○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혜택?	○ 6개업체 8억원임
○ 오수처리시설 지원은?	○ 상수도 상류지역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장례식장 조문대기시설에 대하여?	○ 상가가 2개정도 발생했을 경우 비좁아 만들려 하는 것임.
○ 벼건조 시설에 대한 호응은 ?	○ 대단히 좋음.
○ 지방세 프로그램 윈도우비전 교체에 대하여?	○ 행정정보 구축망 사업으로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 일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계획임.
○ 지적불부합지 측량에 대하여?	○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 측량하는 것임.
○ 지방세 프로그램 원도우비전에 대하여?	○ 행정정보 구축망 사업으로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임
○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 연말에 특정기간을 정하여, 읍면마다 목표액을 주어 평가하여 시항하는 것임.
○ 불용품 매각 수수료에 대하여?	○ 불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하는 수수료임.
○ 청사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 향교땅이 테니스장에 편입되어 사용임대료임.
○ 공유재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관복구입 1,500천원에 대하여?	○ 관복이 낡아서 교체하는 경비임.
○ 2000년도 피해목 벌채 실적에 대하여?	○ 계획은 200ha를 하였으나, 실행은 80ha임.
○ 평창군지 발간에 따른 군조·군화 변경에 따른 대책은?	○ 장기간 소요되므로 내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도 완성이므로 별문제점이 없을 것임.
○ 진부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액은 ?	○ 도비 3억뿐임.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2 .15. 평창군수

나. 수정이유

-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작성

다. 수정주요골자

-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9,1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2%인 7,9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50백만원, 특별회계가 4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8.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
- 특별회계: 원안가결

9.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1부 . 끝 .